

순천대학교 특성화자문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 01 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특성화 발전 방향과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특성화 자문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특성화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
2. 특성화 중점분야 및 학문분야 선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혁신 등에 관한 사항
4. 산·학·관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기능 확대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6.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(산업체 포함)와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전남 동부권(3시, 4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
2.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 관계자, 기업체 임직원, 국가산업단지 관계자 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
3. 이 대학교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사무국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장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이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평가과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4. 01. 0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